

「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추은희 의원 외 14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먹거리 기본원칙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(안 제2조~제4조)
-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정책 종합계획(안 제7조~제8조)
- 먹거리 정책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(안 제9조~제17조)
- 전문기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, 세미나 개최(안 제18조)
- 「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위원회 관련 사항 삭제(부칙 안 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,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」, 「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부서검토 : 유통특작과 의견제출(붙임)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먹거리 정책 종합계획, 먹거리시민위원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및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여 범시민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